

선출안(추천안) 첨부서류-상임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사본제출 불가).

제 출 서 류		특 이 사 항		비 고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이력서		본인이 작성 후 제출			
졸업증명서		대학교 이상 : 반드시 원본으로 발급받아 제출(학사, 석사, 박사 등)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선택사항)			해당 학교
재직증명서		직장에서 반드시 원본으로 발급받아 제출(무직인 경우 제외)			재직기관
경력증명서		이력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 첨부 * 실제 재직기간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본인이 당시에 받았던 임명장이나 위촉장 제출 불가			해당 기관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 본인, 배우자(혼인기간 중 복무 마친 남성限), 본인의 직계비속(남성)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본인이 작성 후 제출			
본인및직계비속의 병역사항		본인이 작성 후 제출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		지방병무청에서 발급(동사무소에서도 가능. 단, 몇 시간 걸릴 수 있음) •병적증명서(원본) : 공직자신고용으로 발급 •복무확인서(원본) : 복무기관에서 발급			각각 지방병무청/복무기관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공개목록		본인이 작성 후 제출			
공개확인서 및 관보(공직자)		현재 공직자이거나 공직자(최근 2년 이내 퇴직)이었던 후보자			
고지거부사유서 및 증빙서류 (고지거부 시)		고지거부사유서 작성 증빙서류 : 별도 주거 및 독자적 생계가 가능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반드시 원본)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등			
재산신고서(최초 또는 변동)		변동신고서 : 재산공개확인서 제출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			
재산신고 관 련 증빙서류	가족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원본) : 후보자 본인, 최근 5년간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원본) : 후보자 본인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부동산 (전세·임차권 포함)	등기부등본(반드시 원본, 인터넷발급 가능)과 주택가격확인서(반드시 원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 소유 여부 확인 •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 가액 확인 * 인터넷 가액 열람 사이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한 가액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찍고 본인이 확인 후 제출 가능 전세(임차)계약서 : 전세(임차)권 신고시			
	자동차 등	자동차등록증 사본 - 소유 여부 확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 - 가액 확인			
	예금(보험)	예금잔액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반드시 원본)			
	유가증권	유가증권 잔고증명서(계좌번호, 종목명, 종목코드, 평가액 등 표시) 등 (반드시 원본) 주식매수선택권 : 교부받을 주식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교부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반드시 원본)			기준일자 통일하여 발급 (기준일자 = 내정일자)
	채권	차용증 사본(사인간 채권의 경우) 등			
	채무	부채잔액증명서(반드시 원본), 차용증 사본(사인간 채무의 경우) 등			

제 출 서 류		특 이 사 항	비고
	금, 백금, 보석류	금, 백금류 : 종류, 함량, 중량, 시장가격 등이 표시되는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원본) 보석류 : 종류,크기,색상, 전문가 평가가액 등이 표시되는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원본)	
	골동품, 예술품	종류, 크기, 작가, 제작연대, 전문가 평가가액 등이 표시되는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원본)	
	회원권	취득가액이 표시되는 회원증서 등(단, 골프회원권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신고)(반드시 원본)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의 종류·내용·존속기간 기타 권리의 명세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 등이 표시되는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원본)	
	출자지분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사업연도의 그 회사 연간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반드시 원본)	
	비영리법인출연	출연재산의 내역,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 사업 기타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서 등록의무자의 직위가 표시되는 관련 증빙서류(반드시 원본)	
<최근 5년간 소득세 등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 본인, 발급 가능한 최근 5년치			
소득세 관 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소득금액증명(원본) ※ 당해 연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에 나타나지 않은 각종 소득공제 내역이 나타나므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기관 • 그 외 : 세무서
	사실증명 (납세사실이 없을 때)	【납세사실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본) : “2020년~2024년 현재 귀속 종합소득세 및 사업·근로·종교인·연금 소득 신고사실 없음” 명시하여 발급 ※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 반드시 제출	
국 세 관 련	납부내역증명	납부내역증명(원본) 【납세사실이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납부 내역 발급 【납세사실이 없는 경우】: “2020년~2025년 현재까지 납부내역이 없음” 명시하여 발급	
지방세 관 련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년간 주소지별, 과세물건지별 개별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원본) 【납세사실이 있는 경우】 :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등 지방세 납부 내역 발급 ※ 현 주소지와 물건소재지·前 주소지(최근 5년 이내) 시·군·구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각 시·군·구의 최근 5년치 납부실적을 모두 발급받아야 함. → 현 주소지 동주민센터(시군구청)에서 다른 지방 자료도 발급 가능 【추가 제출서류】 : 과세사실이 없는 지역 각각에 대하여 “2020년~2025년 현재 까지 과세사실 없음” 명시하여 발급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국세체납	납세증명서	후보자 본인에 대한 서류 제출	세무서
지방세체납	지방세납세증명서	후보자 본인에 대한 서류 제출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본인			
범죄경력확인서		경찰청 등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조회서 확인 후 선출(추천)안 양식의 범죄경력확인서 작성·제출	